

제437회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회의록
(임시회)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
(임시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6년7월22일(수)

장 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517)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309)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913)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차지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678)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940)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58)
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7056)
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261)
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7460)
1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068)
1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488)
1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947)
1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242)
1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6528)

1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6634)
1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7500)
1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8250)
1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8465)
1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8619)
2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580)
21. 기후위기 적응 및 국민안전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92)
22. 기후위험 평가 및 기후 적응역량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차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95)
23.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특별법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40)
24.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16)

상정된 안건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517) 4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309) 4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913) 4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차지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678) 4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940) 4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58) 4
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7056) 4
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261) 4
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7460) 4
1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068)	4
1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488)	4
1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947)	4
1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242)	4
1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6528)	4
1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6634)	4
1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7500)	4
1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8250)	4
1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8465)	4
1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8619)	4
2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580)	5
21. 기후위기 적응 및 국민안전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92)	5
22. 기후위험 평가 및 기후 적응역량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차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95)	5
23.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특별법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40)	5
24.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16)	5

(09시34분 개의)

○소위원장 박지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7회 국회(임시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제1차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을 상정 및 심사하고 심의를 마친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들께서는 발언 시에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발언해 주시고 기록을 위하여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언론인 여러분께 협조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517)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309)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913)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차지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678)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940)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58)
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7056)
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261)
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7460)
1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068)
1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488)
1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947)
1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242)
1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6528)
1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6634)
1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7500)
1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8250)
1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8465)
1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8619)

2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580)
21. 기후위기 적응 및 국민안전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92)
22. 기후위험 평가 및 기후 적응역량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차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95)
23.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특별법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40)
24.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16)

(09시35분)

○소위원장 박지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4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1항부터 9항까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지난 3월 19일 전반기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제3차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에서 동 안건들에 대해서는 이미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소위에서의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소위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소위 의결된 내용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잠정 합의하고 다음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김소희 위원 저 한 가지 건……

○소위원장 박지혜 김소희 위원님.

○김소희 위원 지난 소위에서 거의 통과가 됐는데 그 사이에 금융위가 이제 기후금융, 녹색금융 관련해서 제정법을 만들겠다고 반가운 소식을 전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보고드렸던 내용에 부대의견을 좀 남기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된 안 보시면 공공금융 지원이나 금융회사 책무 조항은 금융 관련된 사항인 만큼 금융위에서 주관해서 정책을 책임감 있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내용을 남겼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거기 내용 안에 68조 4항 보면 녹색채권 업무에 관한 부분은 금융위가 주관을 하되 예산을 실제 운영하고 편성하는 기후부, 기획처와 긴밀히 협조해서 활성화해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내용도 추가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금융위는 탄소중립기본법에서 규정한 금융의 촉진에 관한 사항이 조속히 별도 법률로 제정될 수 있도록 관련된 노력을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얘기를 포함시키고 싶습니다.

부대의견이니까 남겨만 주시면 됩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다른 의견 없으실까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9항까지 이상 9건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잠정 합의한 것으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8항부터 19항까지 이 부분이 저희가 심의해야 될 부분이고요. 장기 감축경로와 관련한 핵심적인 사항들을 담고 있는데요, 축조심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제8항부터 제19항까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소위 자료입니다.

먼저 1쪽입니다. 총 12건의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1쪽과 2쪽에 간략히 주요 내용 위주로 정리를 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쪽입니다.

조문별 검토에서 먼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명시 등입니다.

개정안들의 주요 내용은 첫째, 전 지구적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기여해야 할 몫에 부합하고 두 번째,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고 세 번째,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근거해서 산출한 탄소예산을 고려하도록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시에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의 개정안 첫 번째, 두 번째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는데 세 번째, 탄소예산 명시와 관련해서는 일부 쟁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서왕진 위원, 이현승 위원, 염태영 위원, 박지혜 위원, 김성희 위원 등께서 감축 목표 설정 시에 과학적이고 정량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용어를 법에 명시하는 것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이종배 위원 또 같은 취지에서 김소희 위원의 신중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통합의견으로는 기후부와 협의를 통해서 1항, 2항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기후부와 기획예산처의 의견도 현재 결정 취지를 선언적인 규정으로 반영하는 것은 적절한데 다만 탄소예산에 대해서는 국립기후과학원을 통해서 우리나라 잔여 배출총량 등을 선제적으로 연구·분석한 이후에 법제화 여부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두 번째로, 5년 단위의 중장기감축목표 설정 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정혜경·서왕진·이소영·박지혜·윤준병·위성곤·최혁진 의원의 발의안에서는 5년 단위로 중장기감축목표를 명시하는 내용이 있고, 김소희 의원안은 선형감축경로 비율에 따른 수준으로 감축하면서 비율 하향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종배 의원안은 선형감축경로 또는 그 이하 비율 수준으로 감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서왕진 의원안은 중장기감축 목표 설정 시에 탄소예산을 고려하도록 하면서 5년마다 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소영·위성곤 의원안은 온실가스 배출량은 순배출량으로 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2018년 대비 감축비율을 밑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5차·6차 소위에서의 논의 내용으로는 이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목표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여러 위원님들 의견과 정부 및 산업계 부담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5쪽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서 감축목표의 하한은 선형감축경로의 수준으로 하고 상한은 선형 이상으로 결정하되—밑의 통합의견(안)을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2035년 이후의 감축목표를 하한 및 상한의 범위 형태로 설정을 하면서 2035년 감축목표의 하한 및 상한을 각각 53%, 61%로 하고, 2040년 및 2045년 감축목표 목표의 하한을 각각 69%, 84% 이상으로 하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2040년 및 2045년 감축목표의 상한을 80% 수준 및 90% 수준에서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통합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관계된 산업통상부의 의견으로는 국내 산업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산업 부문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되 산업계의 저탄소 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R&D 및 설비투자 등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확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7쪽의 NDC 및 IPCC의 6차 보고서 내용은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쪽, 9쪽의 자료도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0쪽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공론화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쪽입니다.

세 번째로 부문별감축목표 및 연도별감축목표 계획기간을 명시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부문별감축목표의 계획기간을 20년 또는 2050년까지로 설정하는 안이 있고, 연도별감축목표의 계획기간을 20년 또 10년, 5년, 2050년까지로 설정하는 안이 있습니다. 또한 박지혜·윤준병 의원안에서는 연도별감축목표는 기준 시점의 배출량에서 목표 시점까지 매년 선형감축경로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부와 협의한 통합의견으로는 부칙에서 감축목표의 설정 시한을 세분화해서 명시하는 것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중장기감축목표 수립 시기와 관련해서는 2040년의 감축목표는 2031년 6월 30일까지, 2045년의 목표는 36년 6월 30일까지 수립하는 것으로 부칙에서 제시하였고, 부문별감축목표 및 연도별감축목표는 2035년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2031년부터 34년까지의 연도별감축목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는 것으로 하고, 그 이후에 40년, 45년, 50년의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연도별감축목표는 각각 2031년 말 또 5년 이후인 36년 말, 5년 이후인 41년 말까지 수립하는 것으로 부칙에서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후부와 관계 부처의 의견으로는 기술진보 등 미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5년 단위 목표 외에 부문별·연도별 목표를 한꺼번에 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5년 단위 목표 사이의 연도별감축목표 설정에 대해서도 정부에 재량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중장기감축목표·부문별감축목표·연도별감축목표 재검토 시 고려사항에 탄소예산을 추

가하는 안이 있습니다. 박지혜 의원안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기후위기 대응의 정당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한 기후부·기획예산처의 의견은 IPCC 6차 보고서에서 제시한 전 지구적 탄소예산은 확률에 기초한 개념이며 국가별 탄소예산을 배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현재까지 합의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국립기후과학원을 통해서 우리나라 잔여 배출총량 등을 선제적으로 연구·분석한 이후에 법제화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 산업부는 동일한 취지에서 탄소예산 개념을 법제화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중장기감축목표 등 변경, 새로 설정 시에 국회 심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중장기감축목표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한 경우에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개정된 법률이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므로 그 이후에 미비점이 있으면 향후에 재논의하는 것으로 지난 소위에서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중장기감축목표 등의 설정·변경 시 고려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소위에서는 현행법 사항을 유지하면서 고려사항으로 밑의 표에 있는 10호·11호·12호의 내용을 각각 추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중장기감축목표 등의 설정·변경 시 국민 의견 수렴 및 국회 제출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소위에서는 기후시민회의를 설치하기로 법률이 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이를 대신하는 것으로 의견이 정리되었습니다.

16쪽부터 35쪽까지 조문대비표를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 사실 정부 측 의견을 다 포함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긴 한데요. 정부 측 의견 추가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위원장님, 정부 의견 드리기 전에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감축경로 관련 탄소중립기본법 통합의견과 정부안을 대비한 대비표를 같이 배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를 주신다면 그 자료를 중심으로 정부 의견을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일단은 통합의견 아마 별지 자료로 배포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 의견을 좀 들어 보고 마지막에 한 번에 논의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소위원장 박지혜** 이종배 위원님.

○**이종배 위원** 이호현 차관님, 정부에서 이렇게 통합의견을 만드느라 고생하셨어요. 그동안 이런 정부의 통합의견을 내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논의해야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가 계속 해 왔습니다. 제가 정부에서도 오랫동안 근무를 해 왔고 또 법안 심의를 많이 해 본 경험에 바탕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뒤늦게나마 정부의 통합의견을 만들어 온 것은 대단히 많은 수고를 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진작에 이렇게 냈으면 지난 법안소위 때 더불어민주당 또 조국혁신당 위원님들이 본 위원회 정부 통합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논의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를 진행하지 않으려 한다는 그런 폄하적인 발언을 했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진작에 했으면 그런 얘기가 없었을 것 아닌가 하는 아쉬운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의, 논의를 계속 진행해도 되지요?

○소위원장 박지혜 예.

○이종배 위원 차관,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어요. 반도체 중심으로 호남에 집중적으로 건설하고 또 충청도에는 AIDC 그리고 영남에는 퍼지컬 AI 이런 발표를 했는데 기후부도 이에 대해서는 용수와 전력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하는 발표를 했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종배 위원 반도체 공장 또 AI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전력 이게 호남에 800조, 충청에 그때 392조인가 발표했던 것 같은데 이에 대해 필요한 전력이 얼마입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저희가 계속적으로 현재까지 메가프로젝트 발표한 것에 따르면 30GW 정도 신규 수요가 아마 추가되는 걸로 저희는 계산하고……

○이종배 위원 전체가 30GW.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추가적으로 정확한 계산은 기업들하고 협의를 해서 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30GW 정도의 추가적인 수요가 발생할 걸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 전력 공급하는 방안들을 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럴 때 2035년 기준으로 보아서 30GW의 전력량을 만들어 내려면 거기에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배출되는지 그 계산을 했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지금 관련된 부분에서 추가 전력 수요를 어떤 식으로 어떤 전원으로, 어떤 전력원을 어떻게 배치를 해서 공급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아마 탄소배출량들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관련 부분들도 전력공급 방안과 연계해서 배출량 수준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종배 위원 정확하게는 지금 말씀하실 수가 없다 이거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이종배 위원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서남권 반도체 팹 4기 건설에 기후부에서는 6.3GW 규모의 전력이 필요하다고 발표했고 AIDC는 35년까지 18.4GW 규모로 확장을 하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가지고 2035년에 모두 운영이 되고 가동률이 95%로 가정을 해 보면요. AIDC에는 1억 5312만MWh, 반도체 공장에 5243만 MWh가 필요합니다.

정부에서는 가장 최근에 2025년도 11월 달에 발표한 전력배출계수 얼마인지 기억합니까? 그게 0.4173t인데요, 이산화탄소. 0.4173t을 계산해서 거기에 곱해 보니까 8576만t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이게 30GW가 아니에요. 제가 한 것은 약 24GW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8576만t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2035년까지 우리 감축목표가 53~61%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게 이산화탄소가 2억 8376만~3억 4197만t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 드린 8576만t이면 여기에 25~30%의 이산화탄소가 더 줄어야지 된다. 메가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만 가지고도 한 25~30%의 추가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종배 위원 아니, 숫자를 정확하게는 동의를 못 하겠지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현재의 전력배출계수를 갖고 단순 계산하면 그러한 부분들을 추정해 볼 수 있는데요.

○이종배 위원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지금 우리가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나올지를 알 수 없으니까 우선 이렇게 잠정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 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어쨌든 메가프로젝트로 인해서 추가 이산화탄소가 배출될 것이다, 거기에는 동의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추가적으로 전력 부문이 늘어나게 되면 배출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종배 위원 그것 동의하는 거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다만 전력원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전력 구성을, 공급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서 배출량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어쨌든 현재도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오늘 회의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더 추가로 배출될 수밖에 없는 메가프로젝트 실행을 추진한다면 저는 메가프로젝트 그 자체 가지고는, 위치의 적정성 가지고는 논의를 할 바가 있지만 비수도권에 이런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하는 점은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 메가프로젝트로 인해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될 것은 틀림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메가프로젝트를 할 거냐 아니면 이산화탄소를 탄소중립을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거냐 이 결정을 해야지 되는데 어쨌든 메가프로젝트를 하려고 한다면 이 탄소중립 감축 경로에 우리가 불록형을 선택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말에 경제6단체에서 저를 찾아와 가지고 자기들도 현재의 산업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불록형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요. 그때 경제6단체가 다 오서 가지고 여기 계시는 김소희 간사님, 조지연 위원님과 함께 간담회를 했는데, 아주 절절하더라고요. 절절해. 그래서 불록형으로 꼭 해 달라는 건의서도 받은 바 있는데……

어쨌든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감축 경로는 메가프로젝트도 하면 해야 되고 또 이런 경제6단체의 건의를 고려할 때 불록형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주장을 합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이소영 위원님.

○이소영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방금 이종배 위원이 말씀 주신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정부가 정부 통합의견을 가지고 온 상황인 건데, 이 내용을 듣지 않고 우리가 산업 전망과 온실가스 배출 전망 이런 것들 토론하기 시작하면 법안 논의가 오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

부안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 동일한 의견인지 다른 의견인지 이렇게 쪽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저도 지금 그 얘기를 상의 중이었는데요.

저희 법안 심사자료의 보고를 추가로 마저 들으시고 그리고 정부안까지 듣고 토의를 계속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약간 착각을 했는데, 이 통합의견은 행정실에서 그냥 편집한 거라고 하고 정부안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그러면 36쪽에 추가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탄소예산 정의 및 산정 근거 마련 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탄소예산 정의를 신설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허용되는 잔여 온실가스 배출총량을 정의 조항에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난 소위 때 탄소예산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좀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37쪽입니다.

탄소예산 산정 근거 마련과 관련해서는 먼저 정의 또는 8조에서 규정하는 방안, 별도의 조문을 통해서 근거를 마련하자는 방안,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추가하는 방안 등이 개정안에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통합의견으로 기후부 산하 국립기후과학원에서 탄소예산의 분석·예측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기후부가 제시를 하였습니다. 통합의견을 참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탄소예산의 정의를 풀어 써서 지구 평균 기온 상승 수준을 일정한 온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하여 특정 연도 이후에 허용되는 우리나라 잔여 온실가스 배출총량으로 표현을 하면서 그에 대한 분석·예측 등을 국립기후과학원에서 하는 것으로 통합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38쪽, 39쪽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1쪽부터 조문대비표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7쪽, 마지막으로 부칙 사항입니다.

시행일과 관련해서는 6개월 또는 3개월 등이 있는데 하위법령 개정 소요시간 등을 고려해서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 경과조치 관련해서는 적용례 관련해서 개정내용의 반영 여부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별도 자료로 배부해 드린 탄소중립기본법 기존 소위에서의 잠정 합의사항 및 조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의 통합의견을 별도 조문대비표로 작성을 해서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정부 의견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자료를 배포하시고 하십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통합의견과 대비한 정부 의견을 자료로 같이 배포를 해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정부안 기준으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제8의2 2호입니다.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정의를 신설하고 2030년부터 2045년까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기존 2030년 목표는 총·순 방식으로 적용되었으나 목표 설정 방식을 순·순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기 때문에 기존 연도인 2018년 배출량이 순배출량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참고로 작년 11월 탄소중립기본법이 개정돼서 이행점검 시 순배출량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만 온실가스…… 때문에 중장기감축목표 설정 시에도 기존 연도를 순배출량으로 한다는 것을 명확히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통합의견 제8조제1항 관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의견에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을 제1항으로 담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시 고려할 사항들을 8조 제9항에서 또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편제할지에 대해서는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정부안에서는 일단 고려 사항으로, 제8조제9항에서 다루는 걸로 의견 정부안에는 담았습니다.

정부안 기준 제8조제1항입니다.

2030년 중장기감축목표는 현행과 동일하게 2018년 대비 35% 이상으로 규정했습니다. 이후 기준 연도와 목표 연도를 모두 순배출량으로 통일한 2030년 목표를 대통령령에 별도 규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정부안 기준 제8조제2항입니다.

2035년 이후에 중장기감축목표는 하한 및 상한의 범위 형태로 설정하는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또한 하한은 배출권거래제 등 규제가 적용되는 목표라는 점을 담았습니다.

다음으로 정부안 기준 제8조제3항입니다.

2035년 중장기감축목표는 작년 하반기에 수립해서 국제사회에 제출한 2035년 NDC와 같이 하한 53%, 상한 61%로 정했습니다.

다음으로 정부안 기준 제8조제4항입니다.

2040년 및 2045년의 목표의 하한을 2018년~2050년간 선형경로에 해당하는 69% 및 84% 이상으로 하되 규제와 직접 연동되는 목표인 만큼 국민 경제에의 영향, 감축 수단의 확보 수준 및 이행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자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다음, 정부안 기준 제8조제5항입니다.

2040년, 2045년 목표의 상한은 각각 80% 및 90% 수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040년 80%와 2045년 90%는 IPCC 권고안 및 의원님들께서 주신 발의 법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수준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부안 기준 제8조제9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장기감축목표 설정 변경 시 고려할 사항을 통합의견에서는 제1항에 담았습니다만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8조제1항의 내용을 현행법 체계에 따라서 정부안에서는 제9항제10호~12호에 반영한 것입니다. 현재의 결정 취지 등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제36조의2제1항입니다. 이른바 탄소예산과 관련해서는 현시점에서 정의 규정을 신설하거나 감축목표 설정 시 고려 사항에 추가하는 것은 정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연구·분석을 하고 관련된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국립기후과학원을 이러한 역할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잔여 탄소 배출 총량에 대한 연구·분석하고 이를 추후에 법제화하는 방안으로 정부안에 반영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탄소예산에 대한 정의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가급적 담아서 지구 평균 기온 상승 수준을 일정한 온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 특정 연도 이후에 허용되는 우리나라 잔여 온실가스 배출 총량에 대한 분석·예측 이러한 부분들을 가급적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들을 담으려고 노력을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칙 제1조입니다. 대통령령 개정 소요 시간을 감안해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부칙 2조입니다. 2040년, 2045년 중장기감축목표의 상한·하한을 수립해야 할 시기를 규정했습니다.

목표 수립 시기와 관련해서 2040년 중장기 목표는 2040년 NDC 수립 제출 필요 기한을 고려해서 31년 6월 30일로 하였고요, 마찬가지로 2045년도 36년 6월 30일로 하였습니다.

부칙 제3조입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정부는 국가 목표 수립 이후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부문별·연도별감축목표를 수립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부칙 제3조를 통해 각 감축목표별·부문별·연도별감축목표 수립 시점을 정한 것입니다.

의원님들 법안 중에 50년까지 부문별·연도별 목표를 한꺼번에 정하도록 법안도 있어서 감축목표별·부문별·연도별 목표 수립 시기를 정부안에서 일단 명확히 하는 것으로 담았습니다.

다만 현재 논의 중인 형태로 법이 개정될 경우에 대통령령을 통해 2040년, 45년 목표를 31년, 36년에 확정된 후에 순차적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부문별·연도별 목표를 수립하게 되는 순서로 진행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칙 제3조가 반드시 필요한지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만 2035년까지 부문별·연도별 목표의 연내 수립과 관련해 갖고는 제12차 전기본 수립 시점이 있어서 통합의견에는 2026년 12월 31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만 메가프로젝트라든가 새로운 전력 수요들을 추가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아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담아서 전력 배출, 전력 구성원, 전력 믹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세부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해서 2035년 부문별·연도별 목표 수립 시한은 2027년 6월 30일까지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정부 의견으로 드리겠습니다.

부대의견 관련해 갖고는 산업통상부에서 추가적인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부산업정책실장 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입니다.

부대의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큰 틀에서 탄소중립 관련해서 법안이 마련됐기 때문에 산업부로서도 산업계와 함께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결국은 실행의 문제가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재 가용한 감축 수단이랄지 그다음에 혁신 공정의 도입 시점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부문별 목표가 설정되고, 그다음에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실행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강력하게 정부와 국회가 의지를 표명한다는 차원에서 부대의견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이상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영 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다른 분들이 안 계시면?

○소위원장 박지혜 예.

○이소영 위원 일단 배포된 정부안 파일 기준으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조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 없습니다.

8조 1항에서는 8조 1항의 통합의견이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의 원칙과 기준을 그대로 법문화한 것인데 이거를 정부가 삭제하고 9항에서 언급하자라고 하는 거는 체계적으로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정부안 기준으로 9항이고, 현행 5항에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고려 사항에 실시돼 있는 것들을 보면 이게 원칙과 기준을 선언하는 규정은 아니고 말 그대로 고려 사항…… ‘배출·흡수 전망’,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기술 전망’ 이런 고려해야 되는 하위 레벨의 데이터나 숫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미래에 과중한 부담 이전 방지 이런 원칙이 들어가는 거는 체계적으로 레벨이 맞지 않아서 8조 1항 통합의견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8조의 전체적인 체계에 더 부합한다고 생각하고요.

2항은 기존 규정하고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의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의 번호가 좀 달라서 헷갈리는데 통합의견 기준으로 항 번호를 얘기하겠습니다. 통합의견 2항은 의견이 없고요. 3항의 경우에는 2035년 목표가 상한과 하한 이렇게 범위 형태로 설정된 것에 대해서 목표가 100점이면 100점이고 80점이면 80점이지 어떻게 목표가 80점이면서 100점일 수가 있느냐라는 비판과 지적들이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35년 목표가 이렇게 범위 방식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3항의 통합의견을 보면 35년 목표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목표까지, 그러니까 40년, 45년 목표까지 상한과 하한 방식으로 설정하는 거를 법에 고정시키자, 법에 고착화시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적절한 방식인지 저는 의문이 들고요.

35년 감축목표에 대해서는 어쨌든 공청회든 토론회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NDC가 결정됐고 국제사회에 제출까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상한과 하한, 소위 말하는 레인지 방식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대해서는 법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사이에 시행령으로 정한다 이런 식의 입법 방식을 설사 취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상한과 하한 범위로 설정한다 이렇게 명시하지 말고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정부안에서도 제시된 것처럼 레인지를 언급하더라도 그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두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렇게 통합의견 3항과 같은 내용으로 2035년 이후의 목표를 상한과 하한 범위 형

태로 설정한다라고 못 박을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하한을 규제 연동 목표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게 35년에 대해서는 상한은 어떤 지향점, 하한은 배출권거래제와 연동하는 목표 이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이런 문구가 들어간 걸로 보이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0년, 45년에 대해서 우리가 40년 목표를 결정하는 2031년이 되면 사실 그때는 2030년 감축목표를 달성했는지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을 것이고 지금 불확실한 여러 가지 사실관계들이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명확해져 있는 상태일 것입니다. 정말 소위 말하는 상한 목표가 지향점으로서 실효성 있는 목표인지 또는 하한 목표가 현실적인 목표인지 이런 것들을 그때는 평가할 수 있을 것인데 그때 가서 이걸 상한으로 할지 레인지로 할지 단일 목표로 할지 그런 것들을 2031년에 국민과 국회가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면 되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통합의견 4항은 35년 NDC로 제출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겠고요. 5항과 6항은 5항에서 하한을 언급하고 6항에서 상한을 언급하는 방식인데 앞의 부분에서는 2항에서 2030년 목표, 4항에서 2035년 목표 이렇게 5년 단위 연도별 목표를 중심으로 구조를 짜서 내려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구조의 측면에서는 5항에서 2040년 목표에 대해 언급하고 6항에서 2045년 목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자연스러운 입법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한과 관련해서는 40년, 45년의 하한을 각각 얼마 이상으로 하되 국민 경제에의 영향, 감축 수단의 확보 수준 및 이행 여건 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국민 경제에의 영향’부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 부분은 중복과 사족으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통합의견 1항이 만약에 유지된다라고 하면 원칙이 1항에 선언이 되고요.

그다음에 통합의견 10항에서 1호부터 시작해서 9호까지 고려할 사항이 다 들어가 있고 그 고려할 사항에는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국내 에너지 정책에 미치는 영향’. 여기 8조 5항에 ‘국민 경제에의 영향’ 이런 것들이 이미 다 10항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굳이 이것을 8조에 하한과 상한 숫자를 언급하는 규정에서 사실상 똑같은 취지의 내용을 구구절절 다시 중복하는 것이 체계에도 맞지 않고 중복이고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국민 경제에의 영향’부터 시작해서 ‘필요한 범위 내’라고 하는 부분은 이미 10항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삭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내용으로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어차피 2031년과 2036년에 정부가 40년과 45년 목표를 최종적으로 정할 때 법에 정한 이 레인지나 이런 숫자들의 범위 내에서 국민 경제, 산업에 대한 영향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재량적으로 결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법으로 정부의 그런 재량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재량을 설정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은 10항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넘어가서, 10항에 지금까지는 9개의 호가 있는 상태인데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과학적 분석과 예측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은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가 제시한 세 가지 원칙과 기준 중에서 두 가지는 1항에 들어갔는데 과학

적 분석과 예측에 따라야 된다는 거는 1항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10항 11항에 들어가는 것이 체계적으로 적절해 보입니다.

그리고 탄소예산에 대해서 8조에 언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원래 제 법안에는 그렇게 담겨 있고 그렇게 주장해 왔습니다만 탄소예산에 대해서 온실가스 목표 규정에 규정하는 것보다 국립기후과학원에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분석해 봐라라고 하는 것이 일단은 더 적절하다는 게 정부 의견이고 또 야당 간사님이 제기하신 말씀이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도 그 의견을 수용해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에서는, 부대의견은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나중에 토론하면 되겠습니다만 조금 중복된 표현이나 이런 것들 체계자구 정리는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다른 위원님.

○김소희 위원 궁금해서 좀 확인차, 저는 기본적으로 8조 1항을 삭제해서 뒤로 보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소영 위원님하고 의견이 같고요. 다시 1항으로 살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소영 위원님께서 2030년까지의 목표 달성 상황을 좀 보고 31년부터 해야 되는, 어쨌든 35년까지의 목표가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통합의견하고 정부안 40년, 45년 그 부분에 대해서 2035년처럼 레인지로 둔 부분이 필요하냐라는 의견이신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31년에 다시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저희는 그 부분에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법에 막 숫자를 넣어서 법을 다시 바꿔야 되는 상황이 행어나 발생을 하게 되면 그것은 국회의원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변수가 엄청 많은데 그 고려해야 될 변수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도 제대로 된 자료를 주지 않아서 저희가 그 부분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었고 그러면 정부에서 못 하니까 국회 차원에서 해서 가이드를 줘야 된다 하면…… 그래서 제가 국회예정처까지 요청을 드려서 뭔가 자료를 받아야지만 국회의원으로서는 이런 내용들을 진행할 수 있을까 싶어서 문의를 드렸는데 예정처에서도 실은 국회에서 결정할 수 있게끔 최소한 근거 자료는 마련해야 된다는 내용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자료를 만들 시간도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앞서 이종배 위원께서 말씀 주셨던, 어쨌든 정부가 무슨 메가프로젝트라는 걸 발표했고 그 발표한 내용에 따라서 지금 전기본도 새로 제작하고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일정도 막 연기하는 내용까지, 정부 차원에서 추가로 연도별감축목표 만드는 내용도 막 뒤로 미뤄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고려할 때 40년, 45년 이런 부분을 35년처럼 레인지로 넣는 이런 사항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저도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같이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 차례 보니까, 여기 소위원회 심사 5페이지에 보면 ‘산업계의 저탄소 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대규모 R&D 및 설비투자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은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 전부 다 동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8조 어딘가의 항에 새로 문안을 추가해서, 어쨌든 저희가 중장기감축목표를 추진해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연구개발하고 상용화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 항을 아예 신설을 해서 목표를 정하려면

예산도 뒷받침돼야 된다는 것들을 같이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측은 이 의견을 계속적으로 넣고 있고 그것에 해당되는 내용이 법 안에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은 아예 새로 좀 넣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상한하고 하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정부가 가져오신 게 여야의 의견을 충분히 다 반영하시려는 노력으로 저는 이해는 됐습니다만 현재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저희는 이렇게 가게 되면 단서조항은 반드시 넣어야 된다. 글로벌 에너지 위기를 고려해서 저희가 선형 감축으로 가더라도 그것보다 낮은 수준으로 갈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은 반드시 넣어야 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들 때문에 이종배 위원님께서는 불록형에 대한 그런 말씀도 하신 거라서 이게 어떤 식으로 논의가 되느냐에 따라, 저희가 만약에 31년 이후는 숫자를 넣는 것을 논의하지 않고 그때 가서 논의를 한다 하면 이 단서조항은 필요 없겠지만 반드시 선형 감축 이상으로 한다라고 할 경우는 단서조항을 반드시 추가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 불확실성 부분에 대해서 국회든 정부든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고려를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위원님 발언 신청하셨는데 잠깐 이것은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 제가 듣기로 이소영 위원께서 제안하신 것은, 의문을, 문제를 제기하신 것은 2040년 이후까지도 계속 하한과 상한 범위로 두 개의 목표를 정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통합의견의 3항 같은 것은 필요 없다는 의견이신 것 같고 이 의견이 반드시 숫자를 넣지 말자는 의견은 아닌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소영 위원님 혹시, 이것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소영 위원 숫자는 지금 현재 결정상 넣어야 되는 상황으로 다들 이해해서, 지금 나와 있는 법안들이 숫자로 표현하든 아니면 숫자로 계산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하든 다 그렇게 안이 나와 있는 이유는 현재가 중장기감축목표의 정량적 수준을 입법으로 제시해야 된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라고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는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제 주장은 뭐냐면 정량적인 수준의 범위를 입법으로 제시해야 된다는 게 우리가 지금 어쨌든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전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정부가 가져온 것처럼 69에서 얼마 이상 이런 숫자를, 예컨대 69 이상 80 이하 이런 레인지를 두더라도 이 사이에서 대통령령으로 나중에 정한다 이렇게 하면…… 2040년 목표를 31년에 결정하게 되거든요, NDC를. 그러면 2031년의 국회는 지금 우리랑 다른 분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때의 정부는 또 새롭게 구성된 정부일 텐데 그 정부가 2031년에 우리 국회가 미리 정해 놓은 이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정보들을 가지고 단일 목표로 정하든 범위 목표로 정하든 그때 가서 정하면 되는 것인데 3항에 굳이 우리가 ‘하한 및 상한의 범위 형태로 설정한다’ 이렇게 못을 박아 놓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얼마 이상 얼마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밑의 부분만 남겨 놓으면 그때의 정부가 재량권을 행사하면 되지 않겠나라는 의견이 제 의견입니다. 숫자를 넣지 말자는 의견은 당연히 아닌 겁니다.

○조지연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쭙볼게요. 그러면 통합의견 4항을 삭제해야 된다는 지금 취지인가요?

○이소영 위원 아니요. 3항에 문장이 2개인데요. 전문, 후문이 있는데 제 주장 취지는 전문은 불필요하다는 거고 후문은, 이것은 2035년 NDC를 제출할 때 우리가 결정해서 국

제사회에도 제출하고 기업들에게도 알려진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배출권거래제는 상한이 아니라 하한하고 연동한다는 내용은 우리가 이미 의사결정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3항의 후문 부분, 두 번째 문장은 35년 목표가 있는 4항 뒤에 붙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항을 없애고 3항의 두 번째 문장을 4항으로 보내서 2035년 감축목표의 하한이 배출권거래제랑 연동하는 목표라는 것을 명시하면 2035년에 대한 의사결정은 정확하게 4항에 반영되는 것이고 40년과 45년에 대해서는 5항과 6항에 정량적 범위는 정하되 그 범위 내에서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면 지금 정부는 정할 수 없지만 31년과 36년에 그때 NDC 제출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이후의 정부가 새로운 정보에 기해서 결정하면 되지 않을까, 우리가 굳이 그걸 범위 목표로 먼저 정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라는 게 의견입니다. 명확해졌을까요?

○**서왕진 위원** 이것 관련해서 우선 의견을 좀 드리면요.

○**소위원장 박지혜** 지금 정리하면 4항은 현재대로 2035년 목표를 그대로 반영하자. 그리고 5항, 6항을 각각 40년 목표, 45년 목표에 대한 것으로 하면서 일정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자 이걸 제안하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소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통합의견 3항의 첫 번째 문장만 빼자는 얘기입니다.

○**조지연 위원** ‘정부는 2035년 이후에 중장기감축목표를 하한 및 상한의 범위 형태로 설정한다’, 그러니까 하한 및 상한의 범위 형태로 설정한다 이걸 날리자라는, 이걸 삭제하자라는 취지고?

○**소위원장 박지혜** 예, 확정적으로 그렇게 정하지는 말자.

○**조지연 위원** ‘이 경우 하한은’ 그 하단 부분은 4항의 뒤에 붙이자 이것을 지금……

○**이소영 위원** 예, 맞습니다. 제 의견이 그겁니다.

○**서왕진 위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저도 이 문제 우선 말씀드리고 나머지 부분을 따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소영 위원님이 제기하신 부분이 굉장히 아주 본질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부안 보면 2035년 NDC 정할 때 하한과 상한이라고 하는 형태를, 방식을 우리가 활용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취지는 하한 목표 자체가 너무 낮아서 그 부분에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 지적과 상황들을 고려해서 일단 하한선을 최소한 이 정도를 설정하되 그 이상을 달성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실질적으로는 그 이상의 목표까지도 가능하도록 열어 두자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하한과 상한의 그 중간 어디쯤에, 가능하다면 상한선까지 최대한 달성하는 것을 실제 목표로 설정하는 이것이 취지였는데 이번 40년, 45년 목표 정부안은 실질적으로는 하한이 최종 목표가 돼 버렸고 그조차도, 정부 통합안에 지금 표현돼 있는 하한의 기준에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필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상한도 또 필요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자 이런 형식으로 해 놓으면 실질적으로는 아무 의미 없는 상한이 존재하고 하한조차도 경우에 따라서는 더 낮추는 길을 열어 둔 그런 내용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애초에 35년 NDC를 정할 때 하한과 상한을 설정하고 최대한 상한으로 끌여가기 위해서 노력하자라는 그런 취지보다도 훨씬 더 퇴행된 그런 안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소영 위원님 제안하신 것처럼 우리가 40년, 45년 목표를 정하기 위해서

현재 법에다가 이런 레인지를 두더라도 실질적으로 정부의 조치는 그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구체 목표를 정하는 것 이렇게 정리돼야 취지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본다면 하한과 상한을 레인지로 40년, 45년을 설정하되 그 당시의 판단과 필요에 따라서 실제 구체 목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렇게 되면 하한과 상한 범위 안에서 실제 목표 수치가 정해지는 것 이렇게 내용이 정리돼야지, 지금 정부안대로라면 상한 목표는 아무 의미가 없는데 필요에 따라서 뭐를 정한다고 돼 있고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는 하한 목표조차도 여기에 나와 있는 수치보다 더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설정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약간 사기적인 안이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 점은 분명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김소희 위원님.

○김소희 위원 저는 이런 논의 하는 것 자체가 그래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현재의 판결에 대해서 우리가 방향 제시는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상한과 하한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한에 해당되는 것들은 저희가 다 알고 있잖아요. 2050년 탄소중립목표 달성하는 것 자체도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한으로 제시한 선형 감축으로 가 보려고 노력을 한다. 저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진행, 의미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주시면 조금 많이 서운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2050년 가는 사이에 정말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나오면 저희도 상한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언급이 된 거라고 저는 이해가 되고요.

다만 우려가 되는 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던, 저희의 의지랑 상관없이 발생하는 글로벌 에너지 전쟁이라든지…… 지금 최고가격제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호남 반도체, 어쨌든 수요가 늘어나는, 우리 국가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다른 대책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으니 법 안에서 유연성을 좀 보장하자라는 취지에서 뭔가 저는 단서조항이 꼭 필요하다, 불록형으로 가지 않으려면 단서조항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차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이소영 위원님.

○이소영 위원 일단 지금 입법으로 제시돼 있는 단서조항이 어떤 내용이나면 정량적인 수준으로 입법을 하고 이러이러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정부가 그 밑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국회가 하한이라고 표현하든 법적 목표라고 표현하든 논의를 해서 뭔가 선을 정했는데 이것을 뒤흔들 등 이렇게 하는 폭넓은 사유를 두고 정부가 재량권으로 그것을 낮출 수 있게 하는 건데 언급하시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일은 전부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입법을 하면서 정부가 알아서 그런 사유가 있는지 판단해서, 우리가 정한 목표를 무시하고 그 밑으로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방식보다는……

우리가 지금 이 법안 논의를 하게 된 시초는 헌법재판소 결정인데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는 국회가 결정하라는 거거든요. 국회가 책임 있는 기관이다, 정부는 단기적으로밖에 볼 수 없으니 국회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숙의해서 미래세대의 이익까지 고려해서 결정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커다란 변수나 기술의 변화나

여러 가지 시대의 변화가 생긴다면 그때의 국회가 법을 개정하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연성을 확보해야 되고 정부에 어느 정도 재량권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정부도 얼마 이상 얼마 이하 레인지로 가져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서 그 유연성까지는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유연성을 인정해서 국회가 정량적인 수준을 폭넓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 정도의 독마저도 정부가 임의로 판단해서 재량적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 국회가 이걸 입법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전제 자체가 무너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 있는 지금 국회는 2년 전에 선출돼서 임기가 2년 남은 국회인데 2030년이든 2035년이든 그때 말씀하신 에너지의 위기나 등등 그런 것들이 발생하면 그때의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국민과 국민경제의 모든 종합적인 이익을 고려해서 다시 한번 이 하한을 고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달성이 어려워진다면, 예를 들면 2030년 감축 목표가 있는데 2031년에 보니까 그것을 전혀 달성을 못 했다 그러면 그때의 국회가 이 규정을 그대로 다 둘 수는 없겠지요. 개정을 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는 이미 정했으니까 앞으로 이걸 10년 20년 안 건드려도 되고 변화나 여건이 발생하면 정부가 바꾸세요라고 하는 방식은 현재 취지에 맞지 않다.

그래서 저는 단서 조항은 국회가 짊어져야 되는 책임을 정부에 미루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대할 수밖에 없고요.

메가프로젝트 얘기를 계속 하셨는데 중요하지요. 앞으로 우리 산업의 미래, 경제의 미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국가 프로젝트인데 이것은 어쨌든 개별 단위 사업입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목표나 기후 목표는 체계적으로도 훨씬 상위 정책이지요. 상위 정책이 결정되고 나면 그 이후에 개별 사업이나 어떤 하위의 세부 정책들은 그 상위 정책을 고려해서 설계되어야 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개별 단위 사업인 메가프로젝트가 진행되기 때문에 상위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방식은 우리가 논의하는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인류와 우리 국민들과 지금 어린아이들,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의 앞으로 수십 년간 살아갈 환경을 결정하는 게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상위 정책이기 때문에 상위 정책이 어떻게 설정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포커스를 맞추고 그게 결정되면 메가프로젝트의 이행 방식, 예컨대 에너지의 조달 방식, 화석연료의 비중을 높일 건지 아니면 재생에너지나 원전 같은 전원의 비중을 높일 건지 이런 것들은 그 하위의 정책으로서 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메가프로젝트도 이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1번 고려 사항은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이종배 위원님 하시고 서왕진 위원님.

○이종배 위원 이소영 위원님 말씀에 큰 방향에서 동의합니다. 국회에서 결정하라고 한 걸 정부에다 맡기는 것은 우리가 책임을 좀 방기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고 우리 국회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정리를 해서 입법을 할 필요가 있

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정부에서는 2035년도 지금까지의 단일 목표를 상한으로 정했어요. 이것 정할 때도 국회하고 협의했던 것도 아니고 국회에 나중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보고가 잘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제가 그 상임위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발표한 상한을 우리가 법에다 받아 준 거거든요, 이게. 2035년도에 하한 53%, 상한 61% 이게 적정한지 여부도 우리는 잘 몰라요, 사실.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 못 한 상태고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이 많고 또 거기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정부에서 한 것 또 이왕 발표한 것 그냥 받아 주긴 했는데,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상한으로 꼭 나눠야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이소영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단일안으로 가는 게 맞는데 우리가 이게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한번 전문 기관에서 논의를 하든지 논의할 필요도 있겠다 싶기도 한데.

정부에서 제시를 한 거지요 2040년 하한 얼마, 45년 하한 얼마 이렇게 했는데 하한은 최저 수준으로 보고 하한 이상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만 이 하한에 대해서 우리가 여지를, 그때까지 우리가 이런 걸 충분히 검토하고 그렇지 못한다면 충분한 여지는 둘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소희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조건 부여, 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서왕진 위원님.

○서왕진 위원 목표 설정 관련해서 사실은 35년 NDC 할 때 정확한 근거 또 뒷받침되는 내용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설명되지 못하고 굉장히 급작스럽게 레인지가 결정됐던 과정에 대해서 이종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도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목표를 설정하는 문제 관련해서 사실은 탄소예산 등과 같은 과학적인 근거나 뒷받침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따라와야 된다는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온실가스 1.5℃를 높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제사회에 우리가 부담해야 될 몫을 적절하게 설정해야 되는 거라든지 미래세대에 과도하게 부담을 넘기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것들도 중요한 목표 설정의 기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미래 예측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주 객관적인 과학적 근거만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하기가 어렵고 국제적인 책임이라든지 미래세대의 부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책적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책적 목표 설정 부분에 있어서 산업정책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돼야 되는데 지금 일부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보면 선형감축경로도 사실상 달성 불가능한 것 아니냐, 기업들의 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움과 호소를 들었을 때 그것도 과도한 것 아니냐 이렇게 전제를 해 놓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지금의 이 논의 또 현재의 요구라든지 지난번 공론화위원회의 제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반영할 수 없는 그런 논의로 가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그동안 산업정책이라든지 산업계의 의견들을 산업부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기계적으로 받아들이고 당장 어렵다는 현실론만을 받아들여서 목표를 낮추고 낮추고 했던 것들이 지금까지의 정책 결정 과정이었습니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낮추고 어렵게 만들었던 산업계의 가장 핵심 분야가 철강이고

화학인데 그렇게 해서 우리의 철강이나 화학이 살아나고 국제경쟁력이 높아졌습니까? 그렇지 않았던 현실들을 우리가 고려하고, 특히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책적 목표를 좀 더 분명하게 하고 거기에 맞춰서 오히려 R&D 지원이라든지 또는 정부조달과 같은 산업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을 통해서 그것을 맞춰 간다라고 하는 정책적 기조를 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그런 점에서 적어도 40년·45년의 목표를 설정할 때는 하한선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노선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더 낮춘다라고 하는 것을 정부의 대통령령으로서 정하게 여기다 법안을 해 버릴 거면 법안에 하한선이라고 하는 것을 설정할 의미가 없다는 점에서 아까 이소영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해서 그 부분을 조정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법령으로 나중에 조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을 법에다 하한선 해 놔는데 대통령령으로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 버리면 이 법을 만드는 취지 자체가 사라진다는 점에서 그렇게 해서 안 되고, 적어도 하한과 상한이라는 레인지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목표를 정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문항 자체는 명확하게 정리가 돼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이현승 위원님.

○李憲昇 위원 부산진구를 출신 이현승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논의하는 것 잘 들었고요. 사실 저희 특위가 2개월 연장된 의미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논의를 하면서 정부 측의 의견을 단일 부처가 아니고 정부 간의 통합된 의견을 제시해라 그랬는데 이번에 통합의견을 내 주셔서 가지고 진도가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법안들을 제출했는데 서로서로 탄소배출권 범위가 아주 다양한데 정부 측에서 그걸 모두 다 담으셔서 가지고 하한 상한 이렇게 레인지로 정해서 법을 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3항입니다, 이소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와 있는 법안 전부 통합한 게 범위가 하한이 얼마고 상한이 얼마고 2035년까지 40년까지 45년까지 얼마로 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3항을 조금 삭제하자고 그러셨는데 저는 아예 더 명확하게 상한 및 하한의 범위 형태로 설정을 한다라고, 일종의 정의 조항이지요. 이것 먼저 하고 나서 그 밑에 각 연도별로 하한은 얼마, 상한은 얼마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정부 측에 한번 물어보면, 5항입니다, 통합의견에서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라는 조항이 들어 있었는데 정부안 오늘 말씀하신 걸 보니까 ‘필요한 범위 내에서’를 삭제했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통합의견 5항이고요. 정부안의 4항인데 거기 후단에 ‘국민 경제에의 영향, 감축 수단의 확보 수준 및 이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라는 내용에다가 당초 통합의견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데 저희 정부가 봤을 때는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했기 때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좀 중복적인 단어가 아니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정부안에서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삭제 의견을 드린 겁니다.

○李憲昇 위원 ‘필요한 범위 내에서’라는 그 단어가 필요 없다라고 해서 뺐다는 그런 말

씀인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李憲昇 위원 사실상 그 내용은 같은 거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李憲昇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조지연 위원님.

○조지연 위원 경북 경산의 조지연입니다.

우선 정부 측에서 통합안을 이렇게 마련하신 데 대해서는 늦었지만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안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조지연 위원 이게 그러면 기후에너지환경부랑 산업부와 또 어디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기획예산처……

○조지연 위원 예, 기획예산처. 그러면 이 3개 부처에서는 다 협의를 하신 겁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협의하고 합의한 안입니다.

○조지연 위원 합의된 안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조지연 위원 그러면 박지혜 위원장님.

○소위원장 박지혜 예.

○조지연 위원 저는 아까 전에 이소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8조 1항, 그러니까 통합의견의 8조 1항, 현재 결정문에 담긴 그 내용을 기본법에 담아내는 이 8조 1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여기 정부안에서는 삭제 안으로 왔지만 저는 이 법안을 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이 통합의견의 8조 1항에 대해서 이견이 없으시면 이 부분은 정리해서 방망이를 한번 두들기시고요.

○소위원장 박지혜 방망이 두드리는 게 별 의미가 없어 가지고 나머지 의견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정리할게요.

○조지연 위원 그래서 다음 회의 때는 이것은 정리해서 합의됐다는, 협의된 내용으로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이견이 많이 있는 것이 감축목표로 들어가서 이 범위, 레인지 설정을 해서 하한선, 상한선 이것 두는 것이 이견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물론 목표를 과감하게 설정하고 가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누가 반대하겠습니까마는 이걸 실질적으로 사실 법제화한다라는 그 의미는 사실 정책적 목표이기도 하지만 실제 산업계나 이해당사자들에게 이걸 접목시키면 굉장히 사실 어렵고 굉장히 힘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안에서 담긴 이 단서조항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부대의견을 산업통상부에서 제시하셨나요? 산업계의 대규모 R&D라든지 이런 부분이요.

○산업통상부산업정책실장 박동일 예, 그렇습니다.

○조지연 위원 저는 이 부분도 부대의견이 아니라 조항으로서 기본법에 담겼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8조 1항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감축목표에 대한 부분은 저는 어쨌든 단서조항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혀 두고 그리고 이 부대의견에 담긴 내용은 조항으로 좀 격상시키는 그러니까 명문화하는, 조문화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개진하는 바입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제가 좀…… 그러면 마무리해 주시지요.

○이종배 위원 반복해서 하잖아, 자꾸.

○조지연 위원 그래서 이 부대의견에 대한 의견도 다들 만약에 동의하시는 거면……

○이종배 위원 그것은 위원장이 알아서 할 거라……

○이소영 위원 그것은 위원장이 하실 거예요.

○조지연 위원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종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이제 뭐 이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이 나왔으니까,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도 됐으니까 위원장님하고 양 간사들 협의를 하셔서 가지고 정리를 해 주시면 우리가 다음번 회의에서는 바로 두드릴 수 있도록 좀 협의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해야 될 법, 적응법 관계는 빨리 진행을 하셔서 가지고 같이 통과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예, 저희……

○이소영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으로 하자면요. 보통 이렇게 특위 말고 상임위 법안소위를 하면 아침 10시에 개의해서 오후 한 5시, 6시까지 법안소위를 합니다. 그런데 기후 특위는 최근에 법안소위가 여러 번 열렸지만 시간이 예를 들면 오전…… 지금 1시간 반 정도 지났는데 이렇게 끝까지 논의가 가 보지 않으니까 오늘도 지난번에 한참 얘기했던 탄소 예산 문제를 또 보고해야 되고 20년 단위 감축 목표 또 보고해야 되고 이게 다시 이 본격 논의로 진입하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다른 특위를 할 때는 이것보다 법안소위를 훨씬 더 충실하게 길게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계속 같은 얘기가 회의 모일 때마다 반복되고 있어서 논의가 더 깊이 들어가거나 뭐가 잘 정리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오전 9시 반에 잡혔으면 12시까지는 당연히 법안소위가 진행된다고 예상하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늘 결론을 낼 수 있으면…… 사실 지금 웬만한 것은 지난번에 하면서 또 다 정리가 됐어요. 조지연 위원님 감사하게 또 정리해 주셔서 가지고 1항은 정리가 됐거든요. 2항은 아무도 지금 의견이 없어서 정의규정은 아무도 의견이 없고 탄소 예산, 국립기후과학원 부분도 제가 제일 세게 주장했던 건데 제가 수용하겠다는 얘기해서 이것도 지금 재론의 부분은 아닌 거고 그러면 솔직히 지금 논의해야 되는 게 딱 통합의견 한 기준으로 2항, 3항, 4항, 5항, 6항 이 몇 글자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사실 이견이 있는 부분도 제가 보니까 쟁점이 단서를 넣느냐, 마느냐 그리고 레인지로 설정하느냐, 마느냐 이 두 가지만 지금 쟁점인 거 같아요.

○조지연 위원 맞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러니까 숫자에 대해서는 지금 또 의견이 없으시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오늘 잠깐 정회를 하고 두 분이 논의를 하고 더 이어 가는 방법도 있을 텐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합의를 하고 결론을 내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쟁점이 이제 한 번 더 이걸 열어 가지고 또 소위자료 두꺼운 것을 다시 또 발제를 듣고 또 이게 어디까지 진행이 됐더라 다시 기억을 더듬어서 했던 얘기 또 하고 본론으로 진입되는 데까지 30분, 이것을 또 반복하는 건 너무나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안드리는데 지금 아직 11시도 안 됐고 당연히 소위 열면 12시까지 하는 게 우리가 당연한 관행이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하시고 남은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간사님들이 정리를 해 주시고 그 정리된 내용에 대해서 특별한 부분이 없으면 존중을 해 드리고 이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특위가 창피하게 연장이 됐는데 그 기한도 지금 한 달 남짓 남았거든요. 그런데 전체회의 열고 전체회의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쟁점 딱 두 가지로 보입니다.

○서왕진 위원 저도……

○소위원장 박지혜 서왕진 위원님.

○서왕진 위원 이 방안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논의하실 때 논의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통합안에 있는 5항, 6항으로 그대로 되게 되면 저는 의미 없는 상한선은 형식적으로만 붙게 되고 하한선을 기준으로 해서 하한선보다 더 낮아지는 결과를 우리가 결론을 맺게 된다는 점에서 굉장한 우려가 있고요.

애초 레인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확실한 접근 방법이기입니다. 합시다라는 불가피하게 레인지를 수용한다고 한다면 40년 하한·상한 분명히 하고 그 범위 안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5년 하한·상한 그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것이 애초 레인지를 했을 때의 취지나 목적에 맞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하지 않고 현행대로 하게 되면 가장 낮은 하한선조차도 더 낮춰지게 되고 상한선은 아무 의미 없는 형식에 머물게 되는 그런 내용으로 귀결된다는 점을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소희 위원 의사진행……

○소위원장 박지혜 지금 거의 정리된 것 같은데 쟁점별로 저희 같이 잠깐 정회하고 논의하신 다음에 다시 모이면 어떨까요?

○김소희 위원 이것은 되게 잠깐 정회해서 논의가 안 될 사항으로 보이고요. 이소영 위원님 우려하신 지점 저희 충분히 알겠는데 저희는 또 지금 현상에 맞는 기후적응법안도 이것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 법안도 논의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희 갖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계속 평행성을 유지하는, 어쨌든 정부가 하한·상한선을 가지고 오신 지점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 부분이 마치 상한선 목표는 안 지킬 것처럼 생각하시는 그 지점도 방향도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온실가스 감축 기술만 있으면 저희 언제든 줄여서 새로운 신성장동력을 만들고 싶은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을 바라보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는 저희가 차이가 나는데요. 하나가 법을 바라보는 관점인데 저희는 가능한 법을 고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

래서 고치지 않게끔 하는 그 유연성 조항을 두자라는 게 단서조항이고 세상에 어떤 일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게 기후변화대응은 국제사회가 다 같이 노력할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 지점에 대해서 그걸 무시하는 아니지만 지금 국내에서 미래세대를 얘기하시면서 높은 온실가스 감축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도 그걸 바라보는 다양한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국민을 대변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중국이나 미국이 줄이지 않는 데 우리가 조금 줄인다고 기후변화가 대응이 되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많은 국민들이 계세요. 그리고 ‘우리 기후 적응을 하기 위해서 돈이 많이 필요한데 그러면 국가가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공장이 문을 닫지는 않게 해 줘’라고 하는 국민들도 계세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그 두 가지 측면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평행선을 가지고 가는 거라서 그래서 단서조항을 달아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거고 그 단서조항은 그런 지점에 있어서 유연성입니다.

그리고 하한선이라고 했는데 그 하한선이라고 하는 선형감축 지점도 저희는 굉장히 발전한 방안이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여러 차례 논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으로 발전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회의가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았고 그리고 지난번에 논의가 됐기 때문에 지금 오늘 조금 빠르게 진전이 된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 당 위원님들은 다 단서조항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단서조항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두 가지 평행선 지점에 대해서 저희 간사가 어떻게 합의를 구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의문이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잠깐 정회를 해서 이 부분이 논의될 것 같지는 않고, 저희가 논의를 하겠습니다. 논의를 하고 또 의견 수렴을 더 할 테니 그것은 그것대로 시간을 좀 주시고 저희 당은 8월까지 기후특위에서 온실가스 감축경로와 적응법을 통과시켜서 여야가 지금 정쟁을 하지만 기후특위만큼은 합의가 돼서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는 게 저희 목표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동의를 해 주시면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적응법 안도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이소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소위원장 박지혜 예.

○이소영 위원 적응법안 좋은데 적응법안은 제정법이고 조항도 지금 훨씬 많잖아요.

○김소희 위원 그러니까 논의를 더 해야 되는 거지요.

○이소영 위원 그러니까 탄소중립기본법은 이 특위가 만들어진 미션이고 지금 이견이 있는 조항이 몇 개 남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지금 정리하지도 하고 예를 들면 적응법을 심사한다? 이견 저는 특위가 그렇게 진행되는 특위 본 적이 없고 그러면 저는 로드맵이라도 정확히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시간이 더 필요하니까, 아직까지 기한이 한 달 남았으니까 8월 달에 적응법도 논의하고 이 법도 논의하고 이렇게 얘기를 첫 번째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도 그런 얘기를 간사님들이 해 오셨고요. 그런데 지방선거 또 닥쳐 오니까 지방선거라서 아무도 올 수가 없다, 회의를 못 잡는다 그러셨잖아요. 아니, 지방선거가 어딴어요, 특위 기한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김소희 위원 아니, 지금 이 자리에 민주당 위원님들 안 계시잖아요.

○이소영 위원 모여서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반복돼 왔기 때문에

제가 요청드리는 거는 일정 로드맵을 제시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다음 주에, 오늘이 지금 수요일이잖아요.

○**김소희 위원** 다음 주는 어렵고요. 다음번 회의 때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사 간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을 통과시키겠다고 로드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어요.

○**이소영 위원** 다음 주 회의……

○**김소희 위원** 다음번 회의 때.

○**이소영 위원** 그러면 다음번 회의는 언제인가요?

○**김소희 위원** 그건 정해야지요. 그것은 위원장님이랑 상의를 해 가지고 정해야지요.

○**이소영 위원** 그러면 다음번 회의에서는 탄소중립기본법을 먼저 합의해서 합의가 되든 안 되든 처리를 하는 건가요, 마는 건가요? 아니면 적응법을 먼저 또 하고 8월 말에 모든 것을 또 다시 합의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 특위가 언제 만들어져서…… 이게 지금 유일한 미션이었어요. 적응법은 회부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1년 동안 법안도 발의하지 않고 지금 야당 법안은 4월에 발의됐지요. 이것을 논의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아니, 간사 간 협의를 해 주시고 안 되면 다시 우리가 논의할 수도 있는 건데 간사 간 협의를 요청하는 것도 지금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건가요?

○**소위원장 박지혜** 이 안에서 계속 같은 얘기 반복할 필요 없는 것 같고 그러면 김소희 간사님 저랑 잠깐만 얘기하시고 정회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희가 잠깐만 협의해 보고 다시 공지드리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저는 충실한 전체회의를 위해서라도 소위는 7월 중에 통과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 말고 다른 분들도 의견이 있으실 것 아니겠어요?

○**소위원장 박지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10분 뒤에, 11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박지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간사 간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사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기존의 법안 틀 상태에서 여러 가지 우려를 표명해 주셨는데 우선 저희 여당 쪽에서는 지금 2035년 이후의 감축 목표가 그리고 조국혁신당 서왕진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하한과 상한의 범위 형태로 결정되는 것에 대해서 이게 고착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표현해 주셨고 저도 그 부분에 일정 동의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단 정부가 제가 가져온 글, 범위형 목표에 대해서 지금 야당에서 그 숫자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일단은 정부안의 골자를 유지하는 것으로 간사 간 협의를 진행했구요.

관련해서 또 유연성 부여에 대한 그런 부분을 야당에서 계속 제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에너지 위기 같은 단기적인 위기에 대해서 그리고 구조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는 경제 구조가 고착화되는 경우에 부담이 되는 것을 우려하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기존의 8조 5항에도 보면 중장기감축목표 설정 변경 시에 여러 가지 고려해

야 될 요소들을 규정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까지 감안해서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유연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 동의를 해 주셔서 일단 유연성 조항 삭제에 대해서는 양당이 합의를 했습니다.

다만 지금 부대의견을 제시해 주신 ‘산업계의 저탄소 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대규모 R&D 및 설비투자에 대해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이것에 대해서 법으로 문구를 올리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주셔 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가 수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간사 간 합의는 진행을 했습니다.

이 문구에 대해서 혹시 지금 의견을 주실 수 있을까요? 가져오신 문구가 있으시다고 하셔서.

○**김소희 위원** 제가 아까 한번 말씀드렸는데 ‘국가는 중장기감축목표의 이행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연구개발 및 상용화에 대한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의무사항으로 넣었습니다. 충분해야 합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 좀 넣어 주셨으면, 조항을 신설해 주셨으면…… 어쨌든 지금 산업계가 못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R&D 예산 마련도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들이 좀 있으니까 이 문구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위원장 박지혜** 문구를 혹시, 회람 주실 만한 자료가 있을까요?

○**김소희 위원** 저희가 그냥 쓴 거라서……

○**소위원장 박지혜** 한 번만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서왕진 위원** 그게 어디에 반영된다는 겁니까?

○**김소희 위원** 새로 신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소위원장 박지혜** 8조에 별도의 항으로……

○**서왕진 위원** 신설?

○**조지연 위원** 예.

○**김소희 위원** 산업계에서 부대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는 신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서왕진 위원** 그러면 문구를 정확하게 봐야지요.

○**이소영 위원** 그런데 일단 기획예산처가 이것 동의할 수 있는지 정부 의견도 들어야 될 것 같기는 하네요.

○**소위원장 박지혜** 문구 한 번만 더 읽어 주시고……

○**이소영 위원** 복사를 해서……

○**소위원장 박지혜** 국가는 중장기감축목표의 이행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연구개발 및 상용화에 대한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김소희 위원** 아니면 지금 산업계의 부대의견을 주셨던 내용이 더 구체적이잖아요.

○**소위원장 박지혜** 예, 정부……

○**김소희 위원** 저탄소 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대규모 R&D 및 설비투자 등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확대 방안을 추진하여야 한다. 두 가지 안이 될 수도 있는 거지요. 어떤 것을 더 선호하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반드시 조항을 신설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정부 측 의견.

○기획예산처성장기획정책관 **천재호** 기획예산처 성장기획정책관입니다.

저희가 부대의견을 하는 줄만 알고 와서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정부 합의안을 조문으로 올리는 것은 저희는 동의한다고 말씀드리고요. 다만 지금 김소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면, 이게 ‘행정적’이 저희는 봤을 때는 금융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크기 때문에 재정적 지원만 들어가면 조금 애매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말씀 주신 것 중에 ‘충분한’은 그냥 앞의 것을 하기 위해서 하여야 한다고만 하면 어차피 앞의 것을 조건화해서 그만큼 지원해야 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한’이라는 용어는 의미 없는 용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김소희 위원** 그래서 보시고 그 문구를 정해 주시면 큰 문제 없이 통과는 될 것 같아가지고.

○**이소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제시된 부대의견 내용은 이미 부처 간에 합의가 됐던 문구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법안화하는 조항을 기획예산처에서 지금 즉석으로라도 다듬어 주시지요. 왜냐하면 이 내용 자체는 지금 합의가 되어 있는 거니까 새로운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법조문에 들어갈 때는 사실 부대의견으로 쓸 때랑은……

○**김소희 위원** 다르니까.

○**이소영 위원** 다르니까요.

○**김소희 위원** 저쪽에 드러야 될 것 같은데.

○**이소영 위원** 제 생각에 지금 배포된 것은 부대의견 문구랑은 약간……

○**김소희 위원** 달라요.

○**이소영 위원** 단어에 차이가 있어서……

○**김소희 위원** 그렇지요. 저희는 법……

○**이소영 위원** 아마도 관계부처 장관 회람까지 한 부대의견일 테니까 부대의견 문구를 가지고 저쪽에서 다듬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소희 위원** 정부안에 이런 부대의견이 담길지 모르고 저희는 어쨌든 감축목표를 이렇게 높이려면 충분한 재원 지원 없으면 어렵다라는 것을 예상하고 이것 신설을 요청드리기 위해서 작성을 했는데 이 부분하고 법의 조문상 뭐가 더 정확하고 저희의 의도를 반영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셔서……

○**이소영 위원** 지금 아마 수정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그리고 지금 정부 측에서 검토하시는 가운데 장기 감축 경로 관련해서 조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야당계 제안드리고 합의한 문구가 있는데 이것도 같이 회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위치는 위원님 제안 주신 문구가 8조에 들어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8조의2 이렇게 해서 그 조항을 나누는 게 좋을지……

○**조지연 위원** 8조의2 해서 중장기 감축 목표의 이행, 팔호 달고 이렇게 시작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김소희 위원** 여기 어디?

○**조지연 위원** 8조 12항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감축 목표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8

조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8조의2 해서, 그러니까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이행’……

○**김소희 위원** 별도로?

○**이소영 위원** 그런데 이행이라고 제목을 붙이려면 사실 다른 내용들도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김소희 위원** 그러니까.

○**이소영 위원** 그래서 이행이라는 제목은 좀 큰 제목인 것 같고, 그러니까 너무 포괄적 일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지금 조문 체계를 보니까 지원에 대한 규정, 그러니까 정부의 여러 가지 재정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는 파트가……

○**김소희 위원** 있나?

○**이소영 위원** 일단 11장 보칙에, 보통 이런 재정 지원이 보칙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75조부터 시작되는 보칙 부분에 하나의 항으로 ‘중장기 감축 목표 이행을 위한 지원’ 이런 식의 제목으로 넣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지원……

○**김소희 위원** 저는 그 정도 지원 수준으로 낮추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조지연 위원** 그래요? 그러면 또 추가적으로 붙일 수 있잖아요.

○**김소희 위원** 8조 제목 자체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인데요.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이게 없으면 저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같은 수준으로 좀 해서 항을 추가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뭐든 여러 가지로, 정부 의견도 8조 항에 다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지금 배포해 드리는 것은 8조 3항, 4항, 5항, 6항을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8조 1항은 양당이, 정부에서는 삭제 의견을 주셨지만 선택의 문제라고 아까 말씀하시기도 했고 그래서 8조 1항을 살리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요. 2항, 3항…… 3항에 대해서는 상한·하한을 범위 형태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일단 야당과의 합의를 위해서 저희가 양보를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4항, 5항, 6항에 대해서는 5항, 6항에서 기존 정부안에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라고 하고 여러 가지 단서를 달았었는데 그 부분은 앞서 유연성 조항에 대한 합의를 하면서 5항에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고 국가 에너지정책, 산업,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거기서 다시 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정리를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9항의 10·11호, 12호는 기존에 저희가 소위에서 심사를 한 내용이고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위원장님, 지금 대략적으로 저희가 여야 위원님들이 논의하신 안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소위원장 박지혜** 지금 안 드렸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8조 1항을 수용, 하역간 1항대로, 통합의견이 있는 안대로 정부는 수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행 정부안에서 상한·하한 범위 내에서 그 구조를 가지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문안을 주시면 검토를 해 보겠고요. 마지막으로 8조 1항에 대해서 정부가 8조 5항의 제10호·제12호를 그대로 받는 건 아니고요. 10호,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은 수용 가능하고요. 11호하고 12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보고서 등에서 제시하는 과학적 분석과 예측, 협정 등에서 정한

국제적 행동의 기준 이 두 가지는 정부안 12호에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사실과 국제 기준’ 이렇게 표현을 하면 통합의견의 11호하고 12호하고 다 담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으로 정부안은 12호에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이 통합의견의 11호·12호를 포괄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정리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소영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배포한 자료에서 10호는 수용하고 11호·12호는 정부안에 배포돼 있었던 것의 12호,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 이것으로 대체하자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이소영 위원 저는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실까요?

○서왕진 위원 10호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은 그대로 살린다고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이소영 위원 기획예산처는 혹시 문구 정리되었을까요?

○기획예산처성장기획정책관 천재호 아직 연락을 하고 있어 가지고 조금만……

○소위원장 박지혜 지금 검토하시는 중에 정부안 8의2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의견이 있으셔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기존의 통합의견과 정부안 내용이 있는 자료 7쪽에 보면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부는……

○소위원장 박지혜 부대의견 말고 8의2……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예, 8의2 관련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내에서 합의가 된 그 부대의견의 내용이 전단의 경우에는 감축목표 설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후단의 경우가 ‘산업계의 저탄소 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대규모 R&D 및 설비투자 등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아까 위원님들도 조문화가 필요하다고 한 부분이 후단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부대의견 중에서 우선 전단 부분은 논외로 해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후단 부분에 대해서만 조문화 작업을 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후단의 내용을 조문화를, 부대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면 지금 정부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산업 부문 등의 저탄소 전환을 위하여 대규모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등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수준에서 조금 더 다듬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저는 8의2에 대해서 의견을 달라고 말씀드린 건데…… 정의 조항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8의2…… 1쪽입니다.

2조(정의) 조항 8의2에 중장기감축목표를 통합의견으로, 정의 조항의 정의에 중장기감축목표를 제시했는데 기후부에서 이것을 약어로 하고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의 조항에 넣는 것으로 조금 수정을 해 가지고 제안을 했습니다. 정부안도 가능한 한 데 기본법의 다른 조항들에도 보면 중장기감축목표로 죽 해서, 현행법도 그렇고 개정안의 내용도 그렇고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 조항의 단어를 정의할 때는 그 뒤에 받는

것들을 약어로 받기보다 명확하게 표시를 하는 게 더 낫기 때문에 통합의견에 있는 것처럼 중장기감축목표란 무엇이다 하면서 그 안에서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말한 다라고 하는 게 더 낫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소영 위원 수석전문위원님, 이번에 새로 오셨잖아요. 원래 법제실장도 역임하셨었지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예.

○이소영 위원 그러면 통합의견은 법제실장을 역임하신 수석전문위원님 말씀대로 가는 게 체계상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통합의견 정부안 이렇게 배포됐던 것에 통합의견에 있는 2조 8의2 이 문구를 그대로 반영해 달라는 취지이신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맞습니다.

○이소영 위원 저는 동의합니다. 이견 없을 것 같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정부도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예, 일단 정의 조항은 그렇게 정리하고요.

지금 기다리는 동안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36조의2(국립기후과학원의 설치)는 양당이 합의가 된 상황이고 정부도 이견이 없는 것이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서 기의결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중에 36조 2항에 대한 개정안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를 통합해야 돼요. 앞서서 기의결했던 것은 탄소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연구도 국립기후과학원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2개의 조문을 합쳐서 저희가 나중에 법안 문구 정리를 할 때 같이 정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지금 국립기후과학원이 연구해야 될 사항들에 저희가 합의가 안 된 개념들을 다 몰아넣다 보니까 1항이 굉장히 길게 이례적으로 표현이 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그 의미 그대로 살려서 문구 정리만 하면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 이런 식으로 해서 대략 5개 정도의 사항이 나열돼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각 호로 표현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기의결된 법안과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왕진 위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간사님들 합의해서 나온 문구 8조 5항·6항 관련해서 ‘정부는 2040년 감축목표의 하한은 69% 이상의 범위에서, 상한은 80% 수준에서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이 하한·상한 수치 자체에 대한 이견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지금 논의할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우선 수치 자체는 논의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하면 이 의미가, 법안에는 69~80%라고 하는 레인지가 나왔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 뭘 정한다는 겁니까? 예를 들면 70~79%라는 레인지를 새롭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의미인가요?

○소위원장 박지혜 그 범위와 수준에서 하한과 상한을 각각 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35년에 감축목표 하한이 53, 상한이 61 이렇게 정해졌잖아요.

○서왕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31년에 이걸 정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31년에 정할 때

대통령령에서는 70~79%로 한다 이렇게 정해질 수 있다 이런 의미인가요?

○소위원장 박지혜 예.

○서왕진 위원 이해했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지금 정부안은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의 이행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연구개발 및 상용화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충분한’만 삭제한 것이 의미 있는 변경 사항인 것 같은데……

○김소희 위원 앞에 ‘대규모’가 있나요, 살아 있나요?

○소위원장 박지혜 아니요, 원래 주신 것에 ‘대규모’가 없었어요.

○김소희 위원 아니, 부대의견에 ‘대규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대의견은 이미 합의해서 가져오신 것 아닙니까? ‘충분한’을 빼는 대신에 ‘대규모’는 넣으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획예산처성장기획정책관 천재호 여기 합의안에는 R&D 앞에 ‘대규모’가 있습니다. 대규모 R&D를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충분한 지원하고는. R&D가 대규모라는 얘기니까요.

○소위원장 박지혜 ‘대규모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연구개발 및 상용화’ 이렇게 하면 괜찮다는 말씀이세요?

○김소희 위원 아니요, 대규모 R&D. R&D 앞에……

○이소영 위원 그런데 사실 법을 만들 때는 불확정 개념을 보통 잘 쓰지 않잖아요. 대규모나 충분하나 이런 표현들이 불확정적인 표현이긴 해서 사실 말씀하신 취지는 지금 문구로도 충분히 이해하고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R&D가 대규모 R&D만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김소희 위원 R&D가 전부 다 지원되면 제일 좋지요, 꼭 대규모 아니더라도.

○이소영 위원 예, 굳이 그렇게 국한할 필요는 없어 보여서……

○김소희 위원 예, 그거면 좋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2040년 감축목표 할 때 하한, 상한 있었던 것에 대통령령 앞에 ‘국민 경제에의 영향, 감축 수단의 확보 수준 및 이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문장은 아예 삭제하는 것으로 아까 동의가 된 건가요?

○소위원장 박지혜 제가 제안드린 건 그거예요. 사실은 감축목표 설정 변경할 때 고려할 사항에 1호부터 각 호에 나열된 사항들에 다 포함된 거기 때문에……

○김소희 위원 그런데 저희가 1호부터 10호까지 해당되는 사항은 5항에 달려고 했던 단서 조항으로 이것을 갈음한다였지 기존에 있던 정부안에 있는 그 내용을 삭제한다는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소위원장 박지혜 갈음한다는 게 삭제한다는……

○김소희 위원 제가 제시하고 싶은 갈음 유연성 조항은 선형 이하에 대한 그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는 대신에 1항부터 10항을 9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갈음한다는 거였고요. 정부안에 들어 있었던, 대통령령 앞에 있었던 그 문구는 그대로 살려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소영 위원 아까도 지적한 것처럼 그게 상한과 하한 사이에서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면 통합의견 기준 번호로 10항에 따른 1호부터 12호까지를 고려해서, 그

모든 사항을 고려해서 시행령으로 정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앞에 여러 가지 내용을 넣기 시작하면 이 모든 11개 조항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10항에 붙어 있는 11개, 12개가 다 언급되어야 되는, 이게 완전히 조문의 구조가 꼬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는 10항에 1호부터 12호까지 들어간다고 하는 거니까 그 모든사항을 고려해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게 이 조문의 체계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하한에 대해서만 뭐가 줄줄 붙는 게 중복이고 사실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지연 위원 동의하고요. 위원장님, 지금 4항·5항·6항 제안 주신 것 동의하고요.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은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 등을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에 다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빼도 무방하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5항 8번을 보면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이게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래서 조문체계상 안 맞는 것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수용을 하고요. 그런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라는 그 부분에 8번 같은 경우는 ‘감축 수단의 확보 수준 및 이행 여건’ 이 정도는 명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소희 위원 같은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그러면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김소희 위원 ‘전망’이 아니라……

○조지연 위원 ‘전망’ 이걸 너무 모호하고요. 그래서 원래 당초 정부안에 담겨 있던 ‘감축 수단의 확보 수준 및 이행 여건’ 이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소희 위원 그걸 8번으로 대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지연 위원 예, 8번을 이것으로 대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온실가스 감축 수단의 확보 수준 및 이행 여건.

○김소희 위원 어쨌든 그것을 다 들어내는 대신에 그것에 해당되는 사항을 1번부터 9번 안에 다 반영을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7번도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있으면 어쨌든 국가재정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다 같이 담아 주셨으면 어떨까. 7번, 8번은 그렇게 수정을 하면 여기 안에서 다, 4번에 있는 내용 다 드러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소영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지금 개정안이 발의되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그러면 5항, 그러니까 이거 통합의견 기준으로 10항에 있는 것들을 다 문구 수정을 지금 하자고 하는 건데 그거는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안 나와 있는 거고……

○조지연 위원 그러면 이거 자체, 지금 논의 자체가……

○이소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1항부터 9항까지는 지금 개정안도 발의되어 있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취지는 이해가 가는데,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 문구가 더 좋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지금 이 앞부분까지 더 구체화시켜서 다 하자고 하면……

○조지연 위원 그 앞서서는 계속 과학적 분석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 논의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짚고 넘어가니까 갑자기 이 논의 자체가……

○이소영 위원 아니, 짚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통합의견에 있는 10호, 11호, 12호

가 다 위원님들 개정안에 언급된 거를 통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10호, 11호, 12호는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안 중에 언급되어 있는 거를 취합한 거고요, 이 통합의견에 있는 10호, 11호, 12호는.

○**조지연 위원** 그리고 정부가 당초에 8조 1항을 명시를 이 5항에 다시 담아 온 것으로 제가 처음에 그렇게 제안을, 정부안도 그렇게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거 자체부터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거는 열어 놓고 논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소영 위원** 그런데 그거를 예를 들면 앞부분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까지 지금 문구를 다 수정하자고 하면 이게 완전히 또 새로운 논의가 새롭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조지연 위원** 문구를 수정하자는 게 아니고 정부안에서 이미 가져온 안의 자구 수정을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제안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하는 바고 대신 그 내용을……

○**김소희 위원** 다른 방향으로 답을 수 있는……

○**조지연 위원** 다른 방향으로 답아서, 저희가 그래서 수용을 한 거 아닙니까? 여기 내용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수용한 거 아닙니까?

○**김소희 위원** 그렇지요.

○**조지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그런데 기술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신설안에 대해서 제기됐던 것들은, 그리고 1항도 원래는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내용을 정부가 받은 안을 저희가 정부안이라고 지금 제가 명시했는데 정부안은 사실 아니고.

그런데 지금 이소영 위원님께서 제기하시는 의문은 1호부터 9호까지는 개정안이 발의된 사항이 아니지 않냐, 그런데 다른 조문을 논의하면서 개정사항이 생겼다고 해서 다른 조문을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이렇게 변경해서 입법하는 것이 맞냐 이런 질문을 제기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수석전문위원님……

○**김소희 위원** 오픈해서 열어 놓고 논의할 수 있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하시면 가능은 합니다.

○**김소희 위원**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소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전혀 사실은 우리 개정안도 발의되지 않았던 이 문구를 합의하면 넣을 수 있는 것처럼 논의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 법안의 한 80%가 1년 전에 발의됐고 최근에 발의된 것 몇 개까지 포함했을 때 전혀 논의되지 않았던 거를 지금 마지막 문구 정리를 하는 상황에서 얘기하는 게 입법 절차상 맞는가 하는 말씀이고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냐, 가능하냐 이걸 떠나 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구체적인 위딩은 아까 말씀하신……

○**소위원장 박지혜** 제가 제안을 좀 드리면 5호, 6호, 7호는 사실 국민경제에의 영향들을 조금 더 세분화해 가지고 오히려 명시를 하고 있는 그런 요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건드리지 말고 그러면 8호만 ‘온실가스 감축 수단의 확보 수준 및 이행 여건’으로 변경을 하면 어떨까요?

○**이소영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조지연 위원 좋습니다.

○이소영 위원 저는 이런 게 좋은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지막 문구를 합의하는 과정에서 다른 거를, 지금까지 논의 한 번도 안 했던 거를 막 뜯어고치는 게 좋은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조지연 위원 위원님, 저희도 최대한 협의를 해서 지금 빠르게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사안이고 저희도 충분히 수용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소영 위원 저도 의견 말씀드립니다. 수용하는데 의견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 8조 12항 신설 문구가 지금 배포된 것 같은데요. ‘국가는 중장기 감축목표의 이행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연구개발 및 상용화에 대한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김소희 위원 아니요. 지금 새로운 거, 새로 온 거가 두 가지 안이 있는데요. 기획예산처안 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소위원장 박지혜 그러니까 기획예산처안에 동의하시나요?

○김소희 위원 거기에 설비투자만 더 넣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설비투자 및 상용화 등도 같이 넣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연구개발·설비투자 및 상용화 등에 대한’.

○김소희 위원 예, 그러면 정부, 기획예산처안으로.

○소위원장 박지혜 기획예산처안에서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연구개발·설비투자 및 상용화 등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이소영 위원 조항의 제목은 없네요.

○김소희 위원 그거 말씀드렸는데. 온실가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8조의2 해서 내용을 반영하면 ‘중장기감축목표의 이행 등’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소영 위원 내용이 이행과 관련해서는 민간의 이행도 있고 정부의 이행도 있고 사실 이행이라는 게 모든 부문에서의 이행인 건데 그 이행이라는 조문을 신설하면서 정부의 지원만을 넣는다고 하는 거는 그게 체계와 그 단어 수준, 레벨에 맞는지 모르겠고 이 내용으로 넣는다고 하면 제목은 ‘중장기감축목표를 위한 정부의 지원’ 이렇게 하는 게 이 내용에 부합하는 제목이지요.

○김소희 위원 아니, 저는 나중에 추가로 법안 발의하시면 될 것까지 다 고려해 가지고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등’으로 하면 저희가 산업이 되든 정부가 되든 민간이 되든 계속 추가하겠습니다, 법안 발의해서.

○조지연 위원 제목 없이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이소영 위원 제목이 없는 조항이 없지 않을까요?

○김소희 위원 제목은 없을 수가 없으니까……

○조지연 위원 아니, 그런데……

○소위원장 박지혜 저희 그런데 잠깐 정부 의견.

○기획예산처성장기획정책관 천재호 기획예산처 성장기획정책관입니다.

김소희 위원님 추가해 달라고 하신 의견은 저희는 수용 가능한 사항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의견을 드리고 난 다음에 저희 사무실에 연락이 왔는데 이게 지금 ‘재정적·행정적’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적·재정적’으로 일반적으로 법률 할 때 쓴다고, 그것만 순서만 좀 바꿔 달라고, 법제처에서 보통 그렇게 쓴다고 되어 있어서 그 부분만……

○**김소희 위원** 그건 그렇게 하면 되는데 8조 2항에 대해서……

○**기획예산처성장기획정책관 천재호**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렇게 정리하시지요.

○**소위원장 박지혜** 조항 명칭은 ‘중장기감축목표의 이행 등’으로 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조항 제목의 체계적인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전체회의 남아 있기 때문에 법제실장이셨던 수석전문위원님이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예, 알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거는 왜냐하면 그 비슷한 제목이 다른 조항에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중장기감축목표를 위한 정부 지원도 포함을 해서 같이 검토를 해 가지고 전체회의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저희 그러면 논의가 정리된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그리고 저희 합의안 도출과 관련해서 야당 위원들께서 법안소위를 8월 초에 다시 또 소집해서 적응법 논의를 꼭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양당 간사가 추가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저희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9항까지 이상 19건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 부대의견을 첨부하고자 하는데……

부대의견 필요 없지 않나요?

○**김소희 위원** 금융, 제 금융법 관련된 게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금융법과 관련해서 제안하신, 금융위원회에서.

○**이소영 위원** 지금 방금 이 부분은……

○**소위원장 박지혜** 빼고.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소영 위원** 금융법 부대의견은 그런데 어디에 있는 건가요, 페이지가?

○**김소희 위원** 그거 그 전에 논의된 겁니다.

○**이소영 위원** 그러니까 몇 페이지에 있는……

○**소위원장 박지혜** 문서로 혹시, 페이지……

○**이소영 위원** 그런데 정리가 그러면 위원장님이 주신 이 안에다가 방금 기획예산처랑 정리한 이 안에 이 안을 추가하고……

○소위원장 박지혜 8조의2를 추가하는.

○이소영 위원 온실가스 기술과 관련한 문구를 아까 불러 주신 내용으로……

○김소희 위원 수정.

○이소영 위원 수정하고.

○소위원장 박지혜 ‘온실가스 감축 수단의 확보 수준 및 이행 여건’.

○이소영 위원 그렇게 정리가 된 건가요?

○소위원장 박지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은 말씀으로 아까 해 주시는 했는데 금융위원회에서……

○김소희 위원 예, 그것도 하나 드릴까요?

○이소영 위원 그런데 그거를 문구가 좀 정확해야 되지 않을까요?

○김소희 위원 부대의견은 문구가 정확해야 되나요? 부대의견은 보통 남기니까.

○소위원장 박지혜 금융위원회에서 빠르게 해당되는 법률을 만들어서 통과시켜 달라 그런 내용……

○김소희 위원 그냥 빨리 제정해 달라, 책임을 가지고 빨리 통과시켜 달라라는……

○이소영 위원 아까 구두로 들어서, 메모를 못 해 가지고……

○소위원장 박지혜 금방 개정된 공공금융지원, 금융회사의 책무 조항은 금융에 관한 사항인 만큼 금융위에서 주관하여 관련 정책을 책임감 있게 추진할 것. 다만 녹색채권 업무에 관해서는 금융위가 주관하되 관련 예산사업을 실제 운영·편성하는 기후부와 기획예산처가 긴밀히 협의하여 활성화해 나갈 것, 금융위는 탄소중립기본법 58조 2항에서 규정한 금융의 촉진에 관한 사항이 조속히 별도 법률로 제정될 수 있도록 관련된 노력을 강화할 것, 그런 내용입니다.

○김소희 위원 예, 58조 2항이 아직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재촉한 겁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관계자,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김성희 김소희 박지혜 서왕진 염태영 이소영 이종배 이주희 이현승 조지연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재정경제부

녹색전환경제과장 김현영

산업통상부

산업정책실장 박동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 이호현

기후에너지정책실장 오일영

기후에너지정책관 이경수

기획예산처

성장기획정책관 천재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사무차장 홍동곤

기후감축정책국장 김호철

임시회의록